

제주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116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언, 한주영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장 판사 류호중, 판사 강동훈, 판사 민양이

